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86
----------	-----------

제안년월일 : 2023년 3월 3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다만, 서울 풍납동 토성 등 관련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의 피해와 이에 따른 정상적 문화재 발굴·보존·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은 인정되므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한 선언적 규정을 명시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신속한 처리 노력을 규정함(안 제19조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2항 단서 중 “검토를 제외한다.” 를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어 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 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주민 이주 목적의 건설 공사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어 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